

#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2014년 12월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일·가정 양립 선도형 어린이집」 선정

- 맞벌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어린이집 확산 통로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전국 4만 4천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하는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어린이집을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선도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취업모가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브랜드화하고
  - 맞벌이 이용 편의성, 시설 안전, 시설 운영 등 보육서비스가 우수한 어린이집을 시·도별 1개소씩 선정하여 선도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모범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 이번 선도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공모에는 470여개의 어린이집이 참여, 평균 28 : 1의 경쟁률을 보여 '일·가정 양립'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시도별로 공모에 응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심사와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브랜드 현판 등을 수여해 맞벌이 부모 등이 어린이집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향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컨설팅 사업, 어린이집 멘토·멘티 연계, 우수사례 연구 소모임 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어린이집 사례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올해 선정결과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17년까지 시군구별 1개소까지 지속 확대하여 일하는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4년 선도형 어린이집 선정 결과**

□ 총 17개소 (시도별 각 1개소)

형태	지역	어린이집명	비고
기관	서울특별시	구립성모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장관상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한솔어린이집	
	대구광역시	하늘꿈어린이집	
	인천광역시	꿈나무몬테소리어린이집	
	광주광역시	문화어린이집	
	대전광역시	대전삼성어린이집	
	울산광역시	천상서머힐어린이집	
	세종특별자치시	색동어린이집	
	경기도	밝은누리어린이집	
	강원도	선영어린이집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수안들어린이집	
	충청남도	우주어린이집	
	전라북도	정선어린이집	
	전라남도	여수 여천어린이집	
	경상북도	아롱다롱어린이집	
	경상남도	참사랑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	동화나라어린이집	

**유치원 · 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 통합 평가, '15년 시범평가를 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16년부터 시행, 평가에 따른 등급 공개, 최우수

등급 기관은 평가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 통합 정보공시,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더 알고 싶은 항목 확대, 원비는 '실제' 내는 비용 중심으로 공시

□ 정부는 12.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

○ '평가체계 통합'과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에 따른 유보통합 추진과제 중 1단계 과제로, 지난 11월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2차장)의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 〈유보통합 추진과제〉

- ▲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 ▲ (2단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 (3단계) 교사, 자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관계부처 국장 및 시설운영자, 교사, 학계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

□ 이날 확정된 '평가체계 통합 방안'에 따라 '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며, 평가에 따른 등급도 공개된다.

○ 이에 따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갖추어야할 공통 핵심사항을 점점·평가하고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학부모의 시설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다만, 정부는 현장의 평가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평가항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평가영역(6개) ⇨ 평가지표(27개) ⇨ 평가항목(어린이집: 145개, 유치원: 134개) 등 3계층으로 구성

현 행						통합평가	
어린이집		유치원					
평가영역	6개	평가영역	4개	⇒	평가영역	6개	
		평가지표	11개	⇒			
평가지표	50개	평가요소	30개	⇒	평가지표	27개	
구성요소	308개	(매뉴얼)	-	⇒	평가항목* (어린이집/유치원)	145개/134개	

○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되,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하여,

- 우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학부모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우우수' 등급 시설의 경우 평가부담을 경감시켜줄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매우우수' 등급 시설은 간이평가(1회), '개선필요' 등급 시설은 평가주기 단축(1년)

○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연평균 17,000여개)로 하여 자체평가→ 현장평가 → 종합평가(평가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되며

- '15년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보공시 통합 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하였다.

- 이번 통합은 전화(1,000명), 웹 조사(1,753명) 등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 건강·안전, 교육·보육비용, 교직원 등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하여 공시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 한편, 학부모 요구도·활용도가 낮은 정보는 현장의 업무부담 개선을 위해 간소화하였다.
- 통합항목은 시스템 개편, 법령개정 등을 거쳐 '15년 10월에 적용되며,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제도 개편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11월17일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연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통합된 공시항목으로 더 많은 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이용 편의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첨부 1</b>	<b>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개요</b>
-------------	-------------------------

- 일 시 : '14. 12. 16(화), 오후 3: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2명
  - 정부위원(7)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국무2차장, 기재·교육·복지·행자·여가부 차관
  - 민간위원(5) : 김은주(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장),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지성애(중앙대 교수), 이경자(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 \* 황선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은 불참

□ 상정안건

①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안)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절차, 통합평가지표 등 평가체계 마련

②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방안(안)

- '14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이트 연계('14.11.17)에 이어, '15년 통합공시를 위한 공통항목 등 마련

첨부 2

안건 주요 내용

I. (심의안건①)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안)

□ 평가대상

○ 기관의 수를 고려, 매년 유치원·어린이집을 1/3씩 평가(17,000여개)하되, 평가실시연도의 직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

\* 단, 모든 기관은 통합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1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

□ 평가방법

○ (3단계 평가) 자체평가(시설)→현장평가(전담평가자)→종합평가(전문가)

- 표체계는 6개 영역(보육·교육과정, 교직원, 건강·안전 등), 27개 평가지표 및 145개(어) 또는 134개(유) 평가항목으로 구성

○ (평정방식) 절대평가방식, 평가항목 check(충족, 미충족)→지표별→영역별→기관별로 순차적 등급 부여

①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② (평가영역)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등급 평가지표 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③ (기관) 6개 평가영역의 등급 종류의 수에 따라 4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다만,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개선필요' 등급인 기관은 평가영역·기관 등급도 '개선필요' 부여

□ 평가 결과

○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평가등급과 평정사유, 개선필요사항을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주기 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매우 우수' → 1회 간이평가, '개선필요' → 다음해 재평가 등

□ 향후 일정

○ 어린이집 평가의무화, 중앙정부·지자체간 유치원 평가업무 조정 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15상)

○ 통합평가 시범계획·매뉴얼 개발('15상) 및 시범평가 실시('15하)

○ 관리부처 통합 후 본격 통합평가 실시('16년)

## II. (심의안건②)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방안(안)

□ 추진방향

○ 학부모가 비교하기 쉽도록 통합된 공시항목 및 양식 마련

○ 학부모의 요구가 높은 항목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

\* 건강·영양·안전, 교직원, 특별활동, 교육·보육비용 등

○ 활용도가 낮은 항목 간소화로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 건물 및 면적, 사무직원 등 공시정보 정비·통합, 공시주기 조정

□ 통합 공시항목(안) : 7항목 20개 범위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비고
1. 기본 현황	가. 일반 현황	
	1) 기관 기본현황	
	2) 원장명, 설치·운영자/설립·경영자명	
	3) 유치원 규칙	유치원
	나. 시설 현황	
2. 아동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반 현황	
	나. 교직원 현황	
	1) 직위별·자격별 교직원 현황	
	2) 유치원 교사/보육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3. 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가.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다. 수업일수 현황	유치원
4. 교육·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가. 교육·보육비용	
	나. 특성화 활동/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5.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6. 건강·영양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관리 현황 및 식단표	
	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라.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7. 그 밖에 교육·보육 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통학버스 운영 현황	
	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다.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유치원) *유아교육법 개정 후 별도 공표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급여제공인력 교육 및 주야간 보호시설이 부족

□ 국회 입법조사처는 7월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급여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이 전체 교육 시간의 50%만 진행되었고 교육내용이 이혼위주이며, 5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급여제공인력 교육 부족”에 대하여

- 장기요양 5등급 신설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설장(프로그램 관리자) 등 급여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은 2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을 수립, 금년에 1차년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 2차년 교육 실시할 예정임

\*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19과목 80시간(1차년도 40시간, 2차년도 4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22과목 88시간(1차년도 48시간, 2차년도 40시간)

- 2년에 나누어 실시하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급여제공인력이 장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며,

- 1차년 교육은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 환자 돌봄 등 주요과목 위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15년 2차년 교육시 1차에서 실시한 실습과정 내용을 추가로 보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임

또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훈련 워크북, 일일점검표 등 10종의 인지훈련도구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장기요양기관의 약 70%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지훈련도구 활용 중

- 장기요양 5등급 만족도 조사 결과('14.11월), 수급자(보호자)의 83.0%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 85.0%가 가족 수발부담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15년 2차년 교육을 통해 5등급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임

○ “주야간보호시설 부족”에 대하여

– ‘14.11월말 기준 5등급 대상자는 약 1만명(9,849명)으로, 보도내용의 약 30만명\*과는 차이가 있으며,

\* 장기요양 전체 대상자 중 3~5등급 인원수(307,538명)

– ‘14.11월말 기준 1,670개소인 주야간보호시설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9.5%\*로 5등급 대상자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임.

\* ‘14년 3분기 기준 주야간보호시설 정원 25,763명, 현원 20,466명

향후 5등급 수급자 등 치매한자 증가에 대비해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건립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 유도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제시된 제안의 적정성 및 정책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 ■ ■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명 시대 열어**

–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 돌파, 2030년 1,000만 명 예상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2014년 12월 23일(화) 밝혔다.

○ 이로써 2003년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 61세 이상 인구 : 8,480천명, 61세 이상 연금수급자 : 3,076천명

□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 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총 311개월간 6천9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61세가 되는 올해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부양가족연금 : 연금을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6.9%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하여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8백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92백만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천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하였다.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2009년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이는 '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어르신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참고</b>	<b>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b>
-----------	---------------------------

□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위: 만 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4년 대비
	단독가구	74	78	83	87	93
부부가구	118.4	124.8	132.8	139.2	148.8	9.6 ↑

※ '11년~'14년 6월: 기초노령연금, '14년 7월~: 기초연금

□ '14~'15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동시 재산가액 및 소득 상한 비교

(단위: 만 원)

구분		'14년 (87/139.2만원)		'15년 (93/148.8만원)		증감 (6만원/9.6만원)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주택만 보유	대도시	31,680	44,208	35,820	49,212	4,140	5,004
	중소도시	27,680	40,208	30,820	44,212	3,140	4,004
	농어촌	26,680	39,208	29,570	42,962	2,890	3,754
근로소득*만 보유		172.2	246.8	184.8	264.5	12.6	17.7

※ 홑벌이 기준